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발의일: 2022년 2월 6일

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발의 근거: 학생회칙 제191조제4항제2호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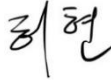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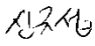


현행 선거시행세칙에 온라인 선거 진행에 관한 규정 부족 및 세칙상 몇 가지 불명확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난 제34대 총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에 동감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관련 국서를 통하여 세칙 개정안을 구성하였다.

이에 선거시행세칙을 개선하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제34대 총선거의 재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목적

- 추천인서명 생략 여부를 중앙운영위원회가 명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아래에 서류제출 절차, 추천인서명 절차, 투표 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도록 하여 비대면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징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 배정 주체의 변경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 시점의 변경, 선거인명부 유출금지 조항의 수정 등 몇 가지 사항들을 수정하여 선거 진행 상의 애매함이 없도록 함
- 비효율적인 절차들을 개선하여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기타 오기 및 사문화되거나 불명확한 부분,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었으나 세칙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의 정리 및 수정

발의자 명단

직책	이름	서명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민지연	민지연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	김찬수

이상 중앙운영위원 7인은 학생회칙 제19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본 개정안의 심의 안건을 2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신·구문 대비표

<p>제14조(사무실)</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협조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사무실을 배정한다.</p>	<p>제14조(사무실)</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협조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사무실을 배정한다.</p>
<p>제18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중앙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소집요구 2.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사항은 무효가 된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2.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또는 그에 대한 징계 부과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p><5항 신설></p>	<p>제18조(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중앙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소집요구 2.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사항은 무효가 된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 사실을 소집 6시간 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2. <2호 삭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기관 등이 배석할 수 있다. 5. <u>선거운동본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불참 사유를 소집 일시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의 경우 해당 상황이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참 사유를 알려야 한다.</u>

<p>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3주 전까지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기간의 내용을 담은 총선거 시행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7조 제2항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이 해소된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시행공고일에 다음 각 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확정된 선거기간 2. 사전투표 유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거 진행 방식 3. 예비후보등록서류 4. 후보등록서류 5. 추천인서명판서류.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번호는 생략할 수 있다. 6.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신청서류 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8. 제15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총선거위탁기간 종료 직후 24시간 내에 총선거위탁 자치기구 선거 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p>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3주 전까지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기간의 내용을 담은 총선거 시행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7조 제2항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이 해소된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시행공고일에 다음 각 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확정된 선거기간 2. 사전투표 유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거 진행 방식 3. 예비후보등록서류 4. 후보등록서류 5. 추천인서명판서류 6.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신청서류 7.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8. 제15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총선거위탁기간 종료 직후 24시간 내에 총선거위탁 자치기구 선거 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p>제30조(선거인명부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을 조사하여 예비후보공고일 자정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2.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전공 학과 및 학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보관하며, <u>선거인명부의 촬영 및 사본 제작 등을 포함한 모든 유출을 금지한다.</u> 	<p>제30조(선거인명부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을 조사하여 예비후보공고일 자정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2.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전공 학과 및 학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보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진행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의 촬영 및 사본 제작을 금지한다.
<p>제37조(후보등록)</p>	<p>제37조(후보등록)</p>

<p>1. 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2.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3.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4. 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5.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및 완료된 정책자료집과 포스터 도안 전자문서 <p>2. 후보등록서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보의 이름 2.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4. 후보의 사진 5. 선거공약 <p>3.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2.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p>1. 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2. <u>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u> 3.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4. 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5.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및 완료된 정책자료집과 포스터 도안 전자문서 <p>2. 후보등록서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보의 이름 2.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3.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4. 후보의 사진 5. 선거공약 <p>3.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2.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u>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u> 4.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p>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p> <p>5.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p>
--	--

<p>4.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p> <p>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 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p> <p>5.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p> <p>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단서 신설)</p>	<p>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p> <p>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u>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 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u></p>
<p><제37조의2 신설></p>	<p><u>제37조의2(서면 제출의 생략)</u></p> <p>1. <u>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예비후보등록서류 및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u></p> <p>2. <u>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서류의 전자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서면으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u></p>
<p><제37조의3 신설></p>	<p><u>제37조의3(등록무효)</u></p> <p>1. <u>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예비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u></p> <p>1. <u>결함이 있는 예비후보등록서류를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u></p> <p>2. <u>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u></p> <p>1. <u>후보등록기간 이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u></p> <p>2. <u>결함이 있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6시간 이내에 완비하지 않은 때</u></p>
<p>제38조(추천인서명)</p> <p>1. 추천인서명은 예비후보공고 이후부터 후보등록기간 종료 이전까지 가능하며 예비후보공고 이</p>	<p>제38조(추천인서명)</p> <p>1. 추천인서명은 예비후보공고 이후부터 후보등록기간 종료 이전까지 가능하며 예비후보공고 이</p>

<p>전의 추천인서명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p> <p>2. 추천인서명은 학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p> <p>3.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p> <p>4. 추천인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내용만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보 이름 2. 후보 사진 3. 후보 약력 4. 출마 동기 5. 서명용지 <p>5. 서명용지는 이름, 학과, 학번, 서명, 추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중 누락된 요소가 있는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p> <p><u><제6항부터 7항까지 신설></u></p>	<p>전의 추천인서명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p> <p>2. 추천인서명은 학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p> <p>3.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p> <p>4. 추천인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내용만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보 이름 2. 후보 사진 3. 후보 약력 4. 출마 동기 5. 서명용지 <p>5. 서명용지는 이름, 학과, 학번, 서명, 추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중 누락된 요소가 있는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p> <p>6. <u>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인서명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u></p> <p>7. <u>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내가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 서명 등 특수한 방법으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u></p>
<p><u><제38조의2 신설></u></p>	<p><u>제38조의2(추천인서명의 생략)</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당해 선거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당해 선거에 한하여 추천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u> 2. <u>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당해 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총학생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를, 자치기구회장(단)의 경우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피선거권을 인정한다.</u> 2. <u>제29조제2항제5호의 추천인서명판서류의 공고를 생략한다.</u>

	<p>3. <u>제3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의 추천인서 명서의 제출을 생략한다.</u></p>
<p>제49조(정책공동자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공동자료집이란 대중에게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B5 크기의 인쇄물을 말한다. 2. <u>총학생회</u>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공동자료집에 수록될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정책설명을 위한 자료 및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영문 정책 설명 자료를 후보등록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정책공동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부착 및 배포한다. 4. 정책공동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p>제49조(정책공동자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공동자료집이란 대중에게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B5 크기의 인쇄물을 말한다. 2. <u>총학생회장단</u>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공동자료집에 수록될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정책설명을 위한 자료 및 10쪽 이상 36쪽 이하의 영문 정책 설명 자료를 후보등록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정책공동자료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부착 및 배포한다. 4. 정책공동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p>제52조(온라인 선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선거운동본부의 홈페이지 2. SNS 계정 3. ARA 4. 학부총학생회 홈페이지 5.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6.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1. 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5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 	<p>제52조(온라인 선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선거운동본부의 홈페이지 2. SNS 계정 3. ARA 4. 학부총학생회 홈페이지 5.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6.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1. 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5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

<p>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3.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p>	<p>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u>보고하여야 한다.</u></p> <p>3.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p>
<p><제60조의2 신설></p>	<p><u>제60조의2 (수개의 징계사안의 처리)</u></p> <p>1. <u>선거운동본부가 행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징계한다. 단, 각 징계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가 시정명령인 경우 병과한다.</u></p> <p>2. <u>선거운동본부가 행한 수개의 행위가 각각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부과한다.</u></p>
<p>제62조(주의)</p> <p>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p> <p>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p> <p>2. 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u>받고도</u>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p>	<p>제62조(주의)</p> <p>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p> <p>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p> <p>2. 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u>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u>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제23조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5. 제47조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6. 제48조제2항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선전물을 배포, 게시할 때 7. 제52조의 온라인 선전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8. 제53조의 선거운동복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9. 제54조의 선거노래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10. 제55조의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11. 유세, 선전물 등의 선거운동 상에서 타 후보, 타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때 12. 이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p>참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제23조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4.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5. 제47조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6. 제48조제2항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선전물을 배포, 게시할 때 7. 제52조의 온라인 선전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8. 제53조의 선거운동복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9. 제54조의 선거노래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10. 제55조의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11. 유세, 선전물 등의 선거운동 상에서 타 후보, 타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때 12. 이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p>제64조(징계의 공고)</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2항 신설></u></p>	<p>제64조(징계의 공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시간은 하루 중 8시와 23시 사이임을 원칙으로 한다.</u> 2. <u>제1항의 단서에 반하여 8시 이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당일 8시에, 23시 이후에 징계사항을 공고한 경우 해당 징계는 익일 8시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u>
<p>제75조(투표일·투표시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표는 2일 이내로 진행한다. 2.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총학생회장단 선 	<p>제75조(투표일·투표시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표는 2일 이내로 진행한다. 2.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총학생회장단 선

<p>거 혹은 자치기구 선거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u><3항 신설></u></p>	<p>거 혹은 자치기구 선거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3. <u>제74조제2항에 의한 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시간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u></p>
<p>제77조(투표용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장단 선거,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마다 별도로 제작한다. 투표용지에는 각 선거운동본부명, 후보자의 성명만을 기재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가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많은 순서로 게재 순서를 정한다. (<u>단서 신설</u>)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p><u><4항의2 신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온라인, 모바일 투표의 투표용지는 본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야 한다. 	<p>제77조(투표용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장단 선거,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마다 별도로 제작한다. 투표용지에는 각 선거운동본부명, 후보자의 성명만을 기재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가 2개 이상인 경우,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많은 순서로 게재 순서를 정한다. <u>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u>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란과 동일한 크기의 “지지선본 없음”란을 두어야 한다. <u>의2 단독후보 선거의 투표용지는 동일한 크기의 “찬성”, “반대”, “기권”란으로 구성한다. 해당 투표용지의 “기권”란은 제4항의 “지지선본 없음”란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u>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온라인, 모바일 투표의 투표용지는 본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야 한다.
<p><u><제84조의2 신설></u></p>	<p><u>제84조의2(온라인투표)</u></p> <p><u>온라인투표로 진행할 경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법 및 절차</u></p>

	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6조(연장투표)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86조(연장투표) 가 투표율이 <u>유효투표율</u> 을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87조(개표) 1.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가 투표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표를 시작하고 개표 시작 시간과 장소를 선거운동본부에게 공지한다. 2.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지정한 참관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참관을 요청한 언론기관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3. 개표는 참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4. 개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총투표자수 공고 2. 각 투표소 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선거운동본부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4. 후보 별 득표를 묶음 별로 분류 및 결과공고 5. 최종 결과 발표 5.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6.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8항의 신설>	제87조(개표) 1.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되고 가 투표율이 <u>유효투표율</u> 을 초과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개표를 시작하고 개표 시작 시간과 장소를 선거운동본부에게 공지한다. 2.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지정한 참관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참관을 요청한 언론기관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3. 개표는 참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4. 개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총투표자수 공고 2. 각 투표소 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선거운동본부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4. 후보 별 득표를 묶음 별로 분류 및 결과공고 5. 최종 결과 발표 5.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6.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8. <u>온라인 투표의 경우 제4항의 개표절차 중 제3호 및 제4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u>
제92조(당선 확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 1.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2.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제92조(<u>당선 확정</u>) 1.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2.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u>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u>
<제92조의2 신설>	<u>제92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2. 선거보고서가 승인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한다.
<p>제94조(재선거)</p> <p>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2.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3. 제8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항 신설> 	<p>제94조(재선거)</p> <p>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2.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3. 제93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해당 선거에 후보로 등록된 자가 없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